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11월 14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11월 16일

라. 상정일자 :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2011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건설국장)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의 용어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당초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안 제5조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 신설(안 제6조).
-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민간인 위촉위원의 연임횟수를 한차례로 제한(안 제7조제6항).
-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안 제8조제4항).
- 팀명칭 변경에 따라 간사 및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재난관리담당주사에서 재난예방담당주사로 수정(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성)

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6.30자로 개정 시행되고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도록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분의 15로 의무예치비율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향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가 증가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기금운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안 제5조).
-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금의 용도를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금회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확대 신설하여 재난예방활동 및 재해복구사업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짐(안 제6조).
- 또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현행 조항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 사료됨(안 제7조).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2011.5.23)으로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8조제4항).
- 그 밖에 팀 명칭 변경에 맞게 간사 및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재난관리담당주사에서 재난예방담당주사로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 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

나. 주요 골자

- 안 제7조 제4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 안 제8조 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함.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4호
----------	-----------

제안년월일 : 2011.12.

제출자 : 이재형 위원 외 1명

1. 수정 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

2. 주요 골자

- 안 제7조 제4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 안 제8조 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 제4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 안 제8조 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6조에 따른다.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라 함은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말한다. 2. “구급고”라 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93조제2항에 의하여 영등포구와 약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p>제2조(정의) ----- ----- 뜻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2. “구급고”란 ----- ----- 따라 ----- -----.
<p>제3조(설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p>	<p>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따른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제4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 등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②·③ (생략)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2. 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제4조(기금의조성) ----- 각 호 -----.

1. 법 제67조에 따른 -----
2. ----- - 그 밖의 기타수입 등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 따라 -----
 -----100분의
 15 -----

 -- 6조에서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 관리 대상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의 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 보
수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
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3.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 및 보
수·보강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

5.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6.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7. ~ 9. (생략)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

나. 제설용 자재 및 삽날 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제설장비임차

다.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이행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와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 9. (삭제)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 3. (생략)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③ (생략)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생략)
2. 기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⑤ (생략)

⑥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 ③ (생략)

④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담당주사를 간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각 호- 사람으로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 사람

⑤ (현행과 같음)

⑥----- 하
한 차례만 -----
-----남은 기간으로-----.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사람- 대하여 예산의 범위-----
-----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 등) ①-----
-----재난예방담당주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94 호
----------	--------

제출연월일 : 2011.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2011.6.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1년 9월에 개정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도록 조례의 용어나 표현을 정비

2. 주요내용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의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율 개정(안 제5조제1항)
 - 매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의 용도관련 개정(안 제6조)
 -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 다.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민간인 위촉 위원의 연임기간을 1회로 제한(안 제7조제6항)
- 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회의 및 수당지급 사항 보완(안 제8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원회”라 함은”을 ““위원회”란”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구금고”라 함은”을 ““구금고”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과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 잡수입 등”을 “그 밖의 기타수입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서”를 “제6조에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우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 아.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 보수사업
 -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 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3.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
 - 나. 제설용 자재 및 삼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비 제외) 및 제설장비임차

다.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이행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와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제7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외하는 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대하여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 중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재난예방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재난예방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6조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라 함은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말한다. 2. “구급고”라 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93조제2항에 의하여 영등포구와 약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p>제3조(설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p>	<p>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 ----- -----.</p> <p>제2조(정의) ----- ----- 뜻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2. “구급고”란 ----- ----- ----- 따라 ----- -----. <p>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 등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②·③ (생략)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2. 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제4조(기금의 조성) ----- 각 호 -----.

1. 법 제67조에 따른 -----
2. ----- - 그 밖의 기타수입 등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 따라 -----
 -----100분의 15 -----

 -- 6조에서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 관리 대상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

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의 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 보
수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
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3.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 및 보
수·보강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

5.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6.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7. ~ 9. (생략)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

나. 제설용 자재 및 삽날 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제설장비임차

다.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이행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와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 9. (삭제)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 3. (생략)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③ (생략)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생략)
2. 기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⑤ (생략)

⑥위촉된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 ③ (생략)

④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⑤ (현행과 같음)

⑥----- 하되 한 차례만 ----- 남은 기간으로 -----.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대하여 예산의 범위 -----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 등) ① -----

